

2026년 투자연계형 GMEP(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창업기업 모집공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AI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2026년 투자연계형 GMEP'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투자연계형 GMEP」 '협약체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AI 분야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성장 기반 마련 및 경쟁력 함양
- 지원대상**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10년 이내 AI 분야 창업기업
- 협약기간** : '26. 6. 1. ~ 11. 30. (6개월)
- 선정규모** : 총 10개사 내외
 - * 본 공고는 일반공모 유형으로 주관기관 및 해외투자사 등 추천을 통한 모집은 별도 진행예정
- 지원내용** : 현지 투자유치 프로그램 및 해외진출자금 8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개요 >

운영국가(지역)	주관기관	해외 협력기관
미국(실리콘밸리 등)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국내 협력기관 :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	Berkeley Skydeck Fortitude Ventures LLC 등

2

세부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 미국(실리콘밸리 등) 현지 투자연계형 액셀러레이팅 및 해외시장 진출자금 80백만원

① **프로그램** : 해외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KPI 수립, 글로벌 사전진단, 투자 IR 등 현지 프로그램 운영

② **해외시장 진출자금** : 액셀러레이팅 참여 목적의 국내외 여비, 해외법인 설립 및 참여인력 인건비 등 해외시장 진출 비용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p>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p>	<p>• 참여기업별 글로벌 진출 KPI 수립, 국내 및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p> <p style="text-align: center;">< 프로그램 구성 (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data-bbox="331 1025 662 1104">사전 프로그램</td> <td data-bbox="718 1025 1042 1104">현지 프로그램</td> <td data-bbox="1098 1025 1422 1104">자율 프로그램</td> </tr> <tr> <td data-bbox="331 1144 662 1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수립 · Closed IR · 글로벌 사전진단 등 </td> <td data-bbox="718 1144 1042 1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투자 IR · 오픈 데모데이 · 투자유치 네트워킹 · 해외실증 PoC </td> <td data-bbox="1098 1144 1422 12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교류회 · 현지 네트워킹 </td> </tr> <tr> <td data-bbox="331 1328 662 1406">4주</td> <td data-bbox="718 1328 1042 1406">5주</td> <td data-bbox="1098 1328 1422 1406">2주</td> </tr> </table> <p>* 상기 프로그램(안)은 예시이며 참여기업 선정 후 구체화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수립) 현지 법인 설립, 해외 파트너십 체결 등 참여기업별 진출준비에 따른 해외 투자유치 관련 목표 수립 - (사전 프로그램) 글로벌 진출 사전진단을 통해 해외 투자유치 관련 준비사항을 검토하며, Closed IR 등을 운영 및 지원 - (현지 프로그램) 현지 비즈니스 미팅, PoC 등 현지 액셀러레이터의 프로그램 및 해외 투자사와의 1:1 투자 IR, 오픈 데모데이 등 프로그램 지원 - (자율 프로그램) 성과 교류회, 선배 기업과의 간담회, AI분야 현지 네트워킹 세션 등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지원 	사전 프로그램	현지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수립 · Closed IR · 글로벌 사전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투자 IR · 오픈 데모데이 · 투자유치 네트워킹 · 해외실증 P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교류회 · 현지 네트워킹 	4주	5주	2주
사전 프로그램	현지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I 수립 · Closed IR · 글로벌 사전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투자 IR · 오픈 데모데이 · 투자유치 네트워킹 · 해외실증 P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교류회 · 현지 네트워킹 								
4주	5주	2주								
<p>글로벌 진출 자금</p>	<p>• 지재권 취득비, 국내·외 출장 여비, 전시회 참가비, 인건비 등 80백만원</p>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11,429만원 (100%)	8,000만원 (70%)	1,144만원 (10%)	2,285만원 (20%)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10% 이상) + 현물(2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는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 사업비 비목 >

비목	비목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창업아이템의 제품(서비스)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 구입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외주용역비	•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위해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지급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비)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에 소요되는 비용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국내외 전시회 또는 박람회 참가등록비 및 부스 임차비용 • (시험·인증비)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 (서버 이용료)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클라우드 서버, GPU 서버 등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 (통번역비) 창업아이템과 관련한 외국어로의 통번역비 •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창업아이템의 해외 반출, 수출시 발생하는 운반비, 보험료 및 보관료의 실 소요비용 • (비자발급 및 여행자보험) 국외 출장 목적 비자발급 및 여행자 보험 • (해외법인설립비) 해외 법인 설립시 필요한 소요비용 • (회계감사비)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비 (의무계상)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해외진출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지급 불가하며, 정부지원사업비의 50% 까지 계상 가능)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교통 및 숙박비만 지원 가능하며 식비 및 일비는 불가)
광고선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제품(서비스)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 AI 분야 창업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업력 10년 이내) **2016년 4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②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참고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글로벌창업 지원사업' [참고4]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글로벌 진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글로벌창업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6년 동 사업 수행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6.3.31.(화) ~ 4.21.(화) 15:00까지**

<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신청·접수는 **15: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5: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7: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7: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별첨2]' 참고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유의 사항 >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신청분야(공고문 5페이지 참고) 중 한 개만 신청**
-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신청분야와 시스템 접수 신청분야 동일 여부 필수 확인**
 - ※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신청분야와 시스템 접수상 신청분야가 상이할 경우,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붙임1 양식 참고)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붙임2 참고)

제출대상	구분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신청기업	필수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② 사업계획서	(붙임 1) 양식에 작성	
		③ 창업기업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확인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붙임2) 증빙서류 양식에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해당시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붙임2) 증빙서류 양식에 첨부	법인사업자 해당
		⑦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해당
최종선정 기업	필수	① 창업유지동의서	최종 선정 기업에 한하여 추후 제출	
		② 청렴실천 선언문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추후 영문 인터뷰 발표자료 제출 안내 예정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공고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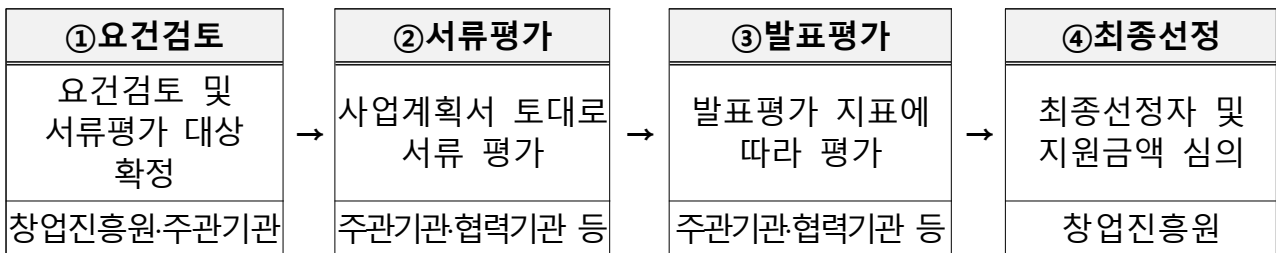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절차

- 평가는 ①요건검토→②서류평가→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서류평가, 발표평가 점수는 개별 산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 가능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 7년 이내 창업기업의 경우 해당 서류(창업기업확인서 등) 필수 제출이며, 업력 7~10년 이내 기업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③ **발표평가** : 협력기관(해외 투자사 등)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온라인 영어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참가기업 선정

-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사업 아이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확인
- *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하에 사업계획서상 참여 인력(4대보험 가입 직원)직원에게 한하여 참여 가능
- 발표평가 자료는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안내가 될 예정이며, 평가자료는 투자유치용 발표자료(IR)* 형식(영문)으로 제출
- * 작성내용(안) : 연간/월간 반복매출 성장률, 고객전환율, 매출총이익률 및 기보유 성과 (고객 확보정도, PoC Lol 등 글로벌 비즈니스 진행경험, 미국 현지 매출 및 수익 등)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분야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제품 및 아이템(차별성 및 확장성), 현지 시장 진출전략, 팀구성, 투자유치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지표 주요 내용 >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서류평가	제품	■ 제품 및 아이템 검증, 차별성, 확장성
	시장진출전략	■ 현지(미국)시장 기보유 성과, 진출전략, 시장성
	팀구성	■ 글로벌 실행력, 팀구성의 전문성 및 경험, ESG 등
	투자유치 준비도	■ 해외투자유치 계획
발표평가	시장진출전략	■ 현지(미국)시장 기보유 성과, 진출전략, 시장성
	해외투자유치 준비도	■ 투자준비도, 성장성, 해외투자유치 계획

□ **사업 운영일정(안)**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table border="1"> <tr><th>공 고</th></tr> <tr><td>중소벤처기업부</td></tr> <tr><td>'26.3.31.(화)</td></tr> </table>	공 고	중소벤처기업부	'26.3.31.(화)	<table border="1"> <tr><th>창업기업 신청·접수</th></tr> <tr><td>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td></tr> <tr><td>'26.3.31.(금) ~ 4.21.(수) 15시까지</td></tr> </table>	창업기업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26.3.31.(금) ~ 4.21.(수) 15시까지	<table border="1"> <tr><th>요건검토 및 선정평가</th></tr> <tr><td>창업진흥원</td></tr> <tr><td>'26.5월</td></tr> </table>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창업진흥원	'26.5월
공 고											
중소벤처기업부											
'26.3.31.(화)											
창업기업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26.3.31.(금) ~ 4.21.(수) 15시까지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창업진흥원											
'26.5월											
<table border="1"> <tr><th>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th></tr> <tr><td>창업진흥원, 창업기업(개인, 법인)</td></tr> <tr><td>~'26.6월 중</td></tr> </table>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창업진흥원, 창업기업(개인, 법인)	~'26.6월 중	<table border="1"> <tr><th>선정 공지</th></tr> <tr><td>창업진흥원</td></tr> <tr><td>~'26.6월 중</td></tr> </table>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26.6월 중	<table border="1"> <tr><th>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th></tr> <tr><td>K-Startup 누리집</td></tr> <tr><td>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td></tr> </table>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K-Startup 누리집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창업진흥원, 창업기업(개인, 법인)											
~'26.6월 중											
선정 공지											
창업진흥원											
~'26.6월 중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K-Startup 누리집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table border="1"> <tr><th>사업수행</th></tr> <tr><td>창업기업</td></tr> <tr><td>'26.6월 ~'26.11월 (6개월)</td></tr> </table>	사업수행	창업기업	'26.6월 ~'26.11월 (6개월)	<table border="1"> <tr><th>중간점검</th></tr> <tr><td>창업진흥원</td></tr> <tr><td>'26.9월 중</td></tr> </table>	중간점검	창업진흥원	'26.9월 중	<table border="1"> <tr><th>최종보고 및 점검</th></tr> <tr><td>창업기업</td></tr> <tr><td>'26.12월 중</td></tr> </table>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26.12월 중
사업수행											
창업기업											
'26.6월 ~'26.11월 (6개월)											
중간점검											
창업진흥원											
'26.9월 중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26.12월 중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시,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중 1인이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동 사업 협약체결자 외의 대표자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서 신청하는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 단,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 승인하에 4대보험가입 직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중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 내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혹은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창업여부 확인서(창업기업용), 주주명부 등)

□ 선정 후 유의사항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투자연계형 GMEP」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본 공고에서 명시한 동시수행 불가사업(참고4 참조)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본 공고에서 명시한 동시수행 불가사업(참고4 참조)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기업부 창업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 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 액셀러레이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음
-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본 사업 참여 인력 중 최소 1인 이상은 대표자 또는 주요 임원진 등 의사결정권자를 포함하여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해외 일정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본 프로그램은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원활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야 함

현장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26.4.9.(목) 14시, 오렌지플래닛 4층*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7 오렌지플래닛

- (등록방법) 하단링크를 통한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

* 링크 : <https://walla.my/survey/WFKDthtchMT32IfyHFY7>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문의) 주관기관 및 국내 협력기관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구분	기관	유선	이메일
운영 및 지원신청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02-2192-5030	injichoi@smilegate.com
프로그램 문의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	02-2192-5297	jiaeb@orangeplanet.or.kr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공고일 전 창업여부 충족 확인)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2**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연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참고 3**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진출 지원 제외사업 목록**

- AI 특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2025년)

참고 4**동시수행 불가 사업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기관)
글로벌		
1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2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범부처 협업)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3	· K-스타트업 센터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참고 5**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창업진흥원 누리집) <https://www.kised.or.kr>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우편신고) (30141)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집현동) 창업진흥원